대전관광공사 2023-158호

2023 대전·세종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 공모

대전관광공사는 관내 관광기업 및 관외 관광기업 간의 상생·협업을 통한 새로운 관광상품·서비스·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'2023 대전·세종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 공모'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.

2023. 7. 27.

대전관광공사 사장

1. 모집개요
□ 신청기간: 2023. 8. 1. (화) ~ 8. 11.(금) 18:00까지
□ 공모분야
- (관내 협업사업) 대전·세종 소재 관광기업 간 협업사업
- (관내·관외 협업시업) 대전세종 소재 관광기업과 타 지역 관광기업의 협업시업
□ 공모대상: 2개 관광기업이 한 팀으로 공모(주관기업+협력기업)
- (관 내)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전·세종인 관광기업
- (관 외) 대전세종 소재 관광기업과 협업하는 타 지역 관광기업
- (우대사항) ① 관광사업자등록 <i>증</i> /지정증 소지기업 (가산점 1점)
② 센터 입주기업 및 비상주 협력기업 (가산점 1점)
* 주관기업: 사업분담비율이 50% 이상인 기업. 관내기업으로 한정 (다음 항 `신청요건' 참고)
□ 지원기간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까지
□ 선정규모: 총 6개 협업 프로젝트
- 관내 협업사업 3개, 관내·관외 협업사업 3개 선정

* 공모분야별 선정규모는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.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
□ 신청요건

구분		관내 협업사업*	관내·관외 협업사업				
	관광기업 2개사가 한 팀으로 공모(주관기업 1개사, 협력기업 1개사)						
신청 대상	주관	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대전·세종인 관광기업	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대전·세종인 관광기업				
-11 0	협력	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대전·세종인 관광기업	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대전·세종 이외 지역인 관광기업				
사업 분담	· 주관기업: 사업분담비율이 50% 이상인 기업. 관내 기업으로 한정됨. · 협력기업: 사업분담비율이 50% 이하인 기업. 관내·관외 기업 모두 참여 가능 · 사업분담비율은 사업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함						
신청 자격	· 사업자등록증상 업종, 업태 상관없이 관광사업 아이템으로 지원하는 기업 모두 참여 가능 · (우대사항) ① 관광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정증 소지 기업(가산점 1점) ②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비상주 협력기업(가산점 1점)						
	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						
	< ①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						

- 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-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-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- 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 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
신청 제외 대상

< ②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- 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- 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③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- ④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
- ⑤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및 기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-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서 규정한 창업 제외 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)을 영위하는 자
- ⑦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에 해당되는 자
- ⑧ 기 출원·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·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
- ⑨ 기타 사업 주관 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* 관내 협업사업의 경우, 대전+대전, 세종+세종, 대전+세종 기업 간 협업사업 모두 가능

□ 지원내용

- 지원기간: 협약체결일 ~ 2023. 11. 30.
- 지원내용: 협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

구분	지원내용
사업화 자금	 사업화지원금 규모: 30,000천원(6개사) 총사업비 구성: 사업화지원금 + 자부담(지원금의 20%) ※ (예) 사업비(36,000천원) = 사업화지원금(30,000천원)+자부담(6,000천원) · 주관기업의 사업분담비율이 50% 이상 이어야 함. ※ 사업분담비율: 사업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함. (예) 사업비(36,000천원) = 주관기업: 20,000천원(55%) + 협력기업: 16,000천원(45%) · 사용기간: 협약기간 동안만 집행 · 사용기준: 첨부(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)참고 · 협약 대상 기업은 연말 성과 보고회 참가 및 성과보고 제출 필수 · 사후정산으로 100%지급(선집행, 후정산)하며, 자부담20% 지출 필수 ※ 요청 기업에 한하여 중간정산 진행.
네트 워킹	· 네트워킹데이 : 센터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타 관광기업과의 협업 기회 창출 · 성과공유회 : 올해의 우수기업 선정
입주 지원	 입주 공간은 대전·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대전 본원에 한함. 사무실 임대료 전액 면제 ※ 관리비는 별도 부과 예정, 제반 여건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에서 임의 조정 가능 2~3인실, 4~6인실 중 기업 상주인원 규모에 따라 배정 ※ 독립사무공간 배치 분야별 동순위 시, 공모전 평가 점수 순으로 우선 배치 입주기간은 1년을 기본 제공함. 단, 심사를 통해 총 3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
맞춤형 컨설팅 무료지원	· 세무/회계, 인사/노무, 홍보/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· 홈페이지(http://daejeonsejong.tourbiz.or.kr/kr/4_1.php)에서 신청

O 성과물 관리

- 협업 프로젝트의 성과물은 기본적으로 협업기업 간 공동 자산으로 인정
- 특허권, 디자인권, 실용신안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 기업 간 협의
- 한국·대전관광공사(관광기업지원센터)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
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·접수기간:	2023.	8.	1.	(화)	~	8.	11.(금)	18:00까지
------------	-------	----	----	-----	---	----	--------	---------

□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(dstourbiz@djto.kr) / 우편접수 불가

□ 제출서류(접수마감일 18시까지)

번호	제출서류	양식	비고		
1	공모 신청서 2부 (기업별 각 1부)	별첨서식			
2	중복 지원 여부 확인서	"			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"			
4	공동사업 참여 동의서	"	파일 형식은 PDF 또는 HWP /		
5	협업 프로젝트 사업계획서	"			
6	협업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(PPT)	자유양식	날인 부분에 기업별 날인 必		
7	참여기업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	555	기비크 크린 ��		
8	(해당자) 참여기업 별 법인 등기부 등본	PDF 스캔본			
9	(해당자) 관광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정증	L			

^{*}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한 서류일 경우,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

[서류 제출 요령]					
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① 전체 서류 스캔본 1부 - 제출서류 전체를 순서대로 스캔한 1개의 파일(pdf) - 파일명: [0. 전체서류.pdf] ② 각각의 제출 서류의 번호를 1번부터 순서대로 기재 - 파일명: [1.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.pdf] 등 - 참여기업이 각기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, 두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[서류번호. 서류이름_기업명1&기업명2.pdf] 형식으로 제출. * 예시 그림 참조 ③ ① ~ ②번의 파일을 하나로 압축하여 제출 - 파일명: [주관기업명&협업기업명.zip] · 1번 - 7번 서류 필수 첨부(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) · 인감 날인 후 스캔 必(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) ·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	예시				

5. 평가 및 선정

- □ 평가절차 : 요건검토 → 발표심사
 - 단, 공모전 <u>참가 신청이 **선정규모 2배수**를 초과할 경우 **사전심사**를 거친 후 발표심사를 진행</u>

□ 요건검토

-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(중복 수혜, 제재조치 여부 등), 제출서류 검토 * 신청기업에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

□ 발표심사

-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프로젝트 지원의 필요성, 사업계획 적정 성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5명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 술평균, 60점 이상 프로젝트 중 상위 6개 프로젝트 최종선정
- 사업계획 세부내용에 대한 발표(10분) 및 질의응답(10분)
- □ 최종선정: 총 6개 사업 선정(발표심사 고득점순)
 - 관내 협업사업 고득점 3건, 관내·관외 협업사업 고득점 3건
 - * 공모분야별 선정규모는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. 유의사항

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과 공사의 본 사업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□ 의무 및 역할

○ 선정자는 협약기간 동안 협약 체결, 사업 수행 실적 및 주요 성과 (매출, 고용, 투자 유치, 사업 추진 등)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(결과보고서 제출 필수)

구 분	내 용	제출시기
사업착수	- 협약과제 목표 및 범위, 수행일정, 관리 방안, 인력 투입계획,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	협약체결 후

중간현황	-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, 진행상황 및 이슈사항 -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의 실적 및 현황 중간점검	협의 후 결정
최종성과	- 참여기업 추진 실적 및 최종 성과	12월 중
기타	- 프로그램 및 인력 등 변경사항 발생 시	수시, 필요시

○ 선정자는 협약종료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참가 유의사항

- 모집·신청 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및 축소할 수 없음
 -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내용의 누락이 있을경우,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공고마감일까지 효력이 있어야 함
-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공사 관광기업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(선정·지원제외)
 - * 합의 하에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를 신청자만 달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, 위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□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

- (협약체결) 본 공모에 최종 선정되더라도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・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상호 간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
 - (현장실사) 공사는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, 사업수행 가능 여부 판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추진할 수 있음(필요시)
- (협약해지)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사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 - 참여기업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 - 전담운영사가 참여기업 보육·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 -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제를 진행할 때
 - 기타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
- (사업화자금) 시업화자금(정부지원금)은 타 정부지원 시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(회계검토)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선정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금

집행 등에 대하여 관광공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 검토 실시

- 대전관광공사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·협약체결 이후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,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(협약)취소,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7. 사업 문의

□ 사업문의

○ 담당자 : 김채운 주임(070-4468-9602)

O 이메일 : codns147@djto.kr

[참고]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기준

□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

* 센터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
=	구분	집행기준	비고			
재료	-구입비	· 제품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구입비 ·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수량 구매가능				
외주	용역비	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용역비선금인정(최대 50%, 이행보증증권 혹은 지급각서 必)				
유형지	·산취득비	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용 가능한 기계, 설비, 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납품 완료건에 한정 생활가전, 통신기기, 일반사무용품 구입 불가 PC 및 노트북은 신규인력 채용 시 인당 1개 한정 건물, 토지,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집행(시설비, 인테리어비 등)은 제한 받을 수 있음 				
무형지	산취 득 비	· 산업재산권, 특허, SW등록 저작권 등 출원·등록 경비				
Q	건비	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및 신규직원 1명당 기존직원 1명 인건비 인정 (인당 월 250만원 한도)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지원불가 대표자 및 친족 등 지급불가 	총 재무지원금 의 50% 초과 집행 불가			
	기자재 임차비	자재 임차비 · 기기, 장비, SW 라이센스 임차료 등, 협약기간 내 인정				
	공간 임차비	·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육료 형태 임차료 집행 불가 · 주택 및 근무좌석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오피스 불가				
지급수수료	시장반응 조사비	· 시장반응 확인 및 홍보를 위한 체험비, 입장료, 가이드비, 참가자 보상비 등 인정				
	전시회참가비	· 등록비, 부스임차비, 참가비, 장치비 등 인정				
	법인설립비	· 법인설립을 위한 법무 수수료				
	세무기장료	· 세무 기장 수수료 지원	월 20만원 한도			
여비 해외여비		· 아이템 고도화,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시 집행 비용 (이코노미 기준 해외항공비 실비만 지급)				
교육훈련비		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4대보험 가입인력 한정, 환급비 제외하고 지급 				
광고선전비	홍보비	·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(앱), 영상물, 리플릿, 광고게재 등 비용 · 배포용 기프티콘 등 경품 집행불가				
<u>0</u> —1	팸투어비	·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 행사 소요비 지원				
~~~~~~ 창업활동비 		· 창업활동을 위한 국내여비, 소모품 구입 등 활용	월 30만원 한도			